

# 2023학년도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해나라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## 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 : 해나라유치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※ 국가공무원법 제 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[형법]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(※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.)

- 나. 장 소 : 해나라유치원
- 다. 기간 및 방법 : **2023년 3월 8일 10:00 ~ 14일 15:00 까지 직접 방문 접수(대리접수불가)**
- 다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유치원비치), 반명함 1매

## 2. 위원 선거

- 가. 선거일시 : 3월 20일(월)
- 나. 선거방법 : 학부모 모바일 투표 (정원이 충족 될 경우 무투표 당선 될 수 있음)
- 다.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: **7명**
- 라. 소견발표: 선거전체 후보 1인 2분 이내 소견 발표

## 3. 기타

- 가.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결정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서, 국·공립 유치원 및 초·중·고의 경우처럼 심의 기능이 없습니다.
- 나. 당선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(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3. 3. 8.

해나라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